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액화도시가스”를 “고정식 액화도시가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을 “자동차 충전사업”으로, “야드 트랙터에”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을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로, “따른 검사”를 “따른 검사 또는 「항만법」 제33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발급”을 “발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읍·면·동별로 정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정한 날 제25조제5항 중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을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제27조의2제1호나목 및 다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을 각각 “최고사용 압력”으로 한다.

제27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이”로 한다.

제27조의7제2항 중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종류·위치”를 “종류·위치·굴착연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나목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1)사)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으로서 제11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다만, 기존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을 이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6의2 제4호 중 “액화도시가스”를 “고정식 액화도시가스”로 한다
별표6의2 제5호 중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1)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버스차고지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까지 10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장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별표6의2 제5호가목1)자), 제5호가목3)나), 제5호가목6)바), 제5호나목4), 제5호나목5), 제5호나목6), 제5호다목1), 제5호다목2) 및 제5호라목 중 “야드 트랙터”를 각각 “자동차”로 한다.

별표6의2 제5호가목6)자) 중 “야드 트랙터 등 항만 이동설비의”를 “자동차 등의”로 하고, 제5호가목8)마) 중 “야드 트랙터”를 “자동차의”로 하며, 제5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6의2 제5호다목 본문 외의 표 중 가)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충전장소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3항제3호 및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2, 별표 1의4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설치 중인 시설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1)사)⑥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제1호나목·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본관 또는 공급관은 제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6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6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이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가 2023년 전인 경우에는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15년이 되는 해를 2023년으로 본다.

제7조(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 확인의 시기에 관한 특례)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6조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제27조의6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확인 시기를 정하여 이행 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② (생략)</p> <p>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u>액화도시가스</u> 자동차 충전사 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 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 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 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 다)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p> <p>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u>야드 트랙터 충전사업</u> 자동차에 고 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 시가스를 <u>야드 트랙터에</u> 충전 하는 사업</p> <p>④ ~ ⑦ (생략)</p> <p>제21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 성검사의 대상 등) ① ~ ⑦ (생 략)</p>	<p>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고정식 액화도시가스</u> ----- ----- ----- ----- ----- ----- ----- ----- -----</p> <p>5. ----- <u>자동 차 충전사업</u> ----- ----- <u>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u> -----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21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 성검사의 대상 등) ① ~ ⑦ (현 행과 같음)</p>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 결과 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5조(정기검사) ①·② (생략)

③ 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⑧ -----

다른 내압용기장착검사, -----

----- 다른 검사 또는 「항만법」 제33조에 따른 시설 장비의 검사-----
-----.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같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정기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제20조의2제1항제2호가
목 및 나목에 따른 가스사용시
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제
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과 「영
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은 10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
아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가스충전시설은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 및 특정가
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일은 한
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
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1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
사 대상이 되는 가스충전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최초
로 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단서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읍·면·동
별로 정한 경우에는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지정한 날

④ (생략)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가. (생략)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43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또는 「항만법」 제33조-----

-----.

⑥·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최고사용압력-----

-----.

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 지난 배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
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
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
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
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
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라. (생략)

2. (생략)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
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생략)

②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
스배관시설”이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
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
치된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
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
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다. 최고사용압력-----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
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
스배관시설”이란 최고사용압력
이 -----

을 말한다.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① (생략)

② 기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
내에 기준위원회 회의에 부칠
것인지를 검토하여 회의에 부치
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자
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회의에 부치고, 회의
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
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게 알려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
인 등) ① (생략)

② 굴착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
다.

1. 2. (생략)

3. 굴착공사의 종류·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4. (생략)

③ ~ ⑦ (생략)

-----.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의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
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종류·위치·굴착
연장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